##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18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 박덕흠 • 서천호 • 김예지

구자근 • 박정훈 • 이종배

강승규 • 고동진 • 김정재

김선교 · 김용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운전에 장애 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4년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 사례와 같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반응속도 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한 운전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의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운전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가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적성검사 대상 사유에 인지장애가 해당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서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운전면허결격사유 중 하나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시로 인지장애를 열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후단 신설).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2호 중 "정신질환자"를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 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인지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기 적성검사에는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시 적성검사에는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	
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	2
으킬 수 있는 <u>정신질환자</u> 또	<u>치매, 조현병, 조</u>
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	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으로 정하는 사람	(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인지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
기 적성검사) ① (생 략)	기 적성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정기 적</u>
	성검사에는 인지기능검사를 포

창원서와 창다

- 1. 2. (생략)
- ③ ④ (생 략)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 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 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 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 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 단 신설>

② (생략)

<u> </u>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우 수시 적성검사에는 인지기
능검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